##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398

발의연월일: 2022. 7. 11.

발 의 자: 강훈식 · 김윤덕 · 류호정

신정훈 • 이동주 • 이용빈

이학영 • 전용기 • 정필모

조정훈 의원(10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 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함(안 제5조의13).

법률 제 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u>자</u>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
<u>한다)</u> 의 운전자가 「도로교통	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